

[존엄성, 발달 그리고 대화]

I. 도입(서론)

1. 2009년 11월 20일, 국제사회는 유엔총회의 아동권리협약채택 20주년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및 동료들은 이를 동안 행사를 개최할 것임. 이 행사는 “존엄성, 발달 그리고 대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당사국과 유엔,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 국가인권기관, 아동·청소년집단, 학계 및 협약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행사는 2009년 10월 8일 금요일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될 것이다.

II. 일반정보

2. 3가지 주제
 - (a)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 (b) 협약이 직면한 3가지 도전 강조: 아동의 존엄성 보장, 아동발달을 위한 충분한 기회제공, 협약의 참여적 접근방법에 의거한 성인과 아동의 대화 촉진
 - (c) 193개의 비준과 17년간의 보고 이후, 협약의 이행 및 상황을 평가하고, 두 가지 선택의정서를 협약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임.
3. 이 회의는 본회의에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워크숍에서는 토론으로 구성된다. 워크숍은
 - 이행 및 모범사례예제의 성과 확인
 - 미래와 제약에 대한 도전 확인
 - 이행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우선순위 수립
4. 위원회는 2009년 1월에 열린 50번째 회의에서 잠정적인 아젠다를 도입함.
5. 행사기간동안

- (a) 간부급 국제연설자(high-level international speaker)가 첫째 날 아침에 세 가지 주제 ‘존엄성, 발달과 대화’에 대한 개회사를 함.
- (b) 세 가지 주제 ‘존엄성, 발달 그리고 대화’는 워크숍에서 논의되며, 워크숍은 각 주제마다 두개의 하위주제에 초점을 맞춤. 워크숍은 첫째 날 오후와 둘째 날 오전, 오후에 열림.
- (c) 각 워크숍은 6개의 권장사항에 동의할 수 있으며, 권고는 수집하여 본 회의의 폐막식 때 제출한다.
- (d) 행사의 중심이 될 효과적인 아동참여가 다양한 워크숍, 전시회, 드라마틱 아트 및 동영상과 같은 특별한 아동구성활동을 포함하는 세션을 통해 촉진될 것이다.

III. 결과

6. 회의는 다음의 결과를 기대한다.

- “존엄성, 발달 그리고 대화”라는 세 가지 테마에 대한 권장사항 채택
- 모범사례와 협약 이행에 있어서 단점 및 도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보고서
- 2010년 1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 및 채택

7. 회의에서 나온 문서가 포함된 연구서가 행사 이후에 출판됨.

“존엄성, 발달 그리고 대화”

- 8. 아동권리협약은 권리의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는 중립적인 글이 아니라 아동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창조하는 도구임. 협약의 보편적인 비준이 아동의 새로운 지위에 큰 힘을 줌. 협약이 채택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관한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음. 우리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협약이행이 필요하며, 협약의 원칙과 조항이 모든 아동의 권리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활동을 변화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 9. 그러나 위원회가 불충분한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관심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는지와 함께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권리에 기초한 접근을 받아들이고 채택하는 방법에 대한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필수적인 단계들을 취하도록 당사국을 격려하는 방법을 찾는 데도 초점을 둔다. 권리에 기초한 접근은 “존엄성, 발달 그리고 대화”라는 테마와 관련하여 회의 내내 강조될 것이다.

[테마 I : 존엄성]

아동권리협약은 존엄권(the right of dignity)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존엄성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하는 권리를 지닌 아동의 지위를 말한다. 인권관점은 인권접근의 기초이며, 인격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근거한다.

소주제 1: 아동: 권리자 vs 상품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아동의 새로운 지위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착취(성적 착취 및 학대를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는 제3세계대회(Third World Congress, Rio de Janeiro, November)와 그 권고사항에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은 무엇이 될 것인가? 세계대회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주제로 스톡홀름(1996)과 요코하마(2001)에서 개최된 이래 세계는 아동의 성적학대문제에 대하여 더욱 더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관련 국제규정들을 선포해왔다(팔레르모 의정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퇴치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세계노동기구 협약 182호,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럽평의회, 그리고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아동보호에 대한 새로운 유럽평의회).

예방은 민간영역에서만 공공역역의 모든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을 예방하는가? 기본적인 정의를 넘어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대처하는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진실인가? 아동권리협약의 관점은 이행된 예방적인 발안은 거의 없지만,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가 많다는 것이다. 예방은 정부의 손에 달렸다. 정부가 어떻게 예방에 투자하는가?, 그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소주제 2: 아동에 대한 차별

아동은 그들이 아동이고 자주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차별 당한다. 워크숍에서는 사실상(자주 적법한) 차별의 형태를 다루고 세계적인 문제인 장애아동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 정부는 아동과 장애를 지닌 아동이기에 오는 이중차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위하여 어떠한 관심을 갖는가?

[테마 II: 발달]

발달은 협약 제6조에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언급되어있다. 마찬가지로 협약의 서문에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발달”을 아동의 신체적, 지능적, 정신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개념의 넓은 의미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이행방법은 모든 아동을 위한 최적의 성취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 주요문제는 당사국이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조약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이다.

소주제 1: 당사국의 의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 경제위기동안 아동의 권리는 사치인가?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면, 당사국은 협약에 의해 모든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국제사회가 아동을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와 주거, 음식, 교육, 건강,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의 향유에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협약 제6조는 기본적인 생존권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과 관련된 협약 제4조와 함께 읽혀져야 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최소한의 존중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아동과 여성 및 가족은 세계경제위기의 첫 번째 희생자라고 한다. 아동은 그들의 자라나는 생각과 마음, 몸으로 빈곤을 경험한다. 또한 박탈이나 매우 빈곤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그들의 권리나 권리행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현재의 위기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적 빈곤을 악화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인류의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지금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며, 사치처럼 보인다.

소주제 2: 실제에서 원칙의 실현으로서의 역량발달

아동기는 발전경험이다; 당신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청소년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같은 권리에 대한 자격이 있다. 정부, 공동체, 가족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아동의 개념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이다. 실제로 아동의 역량발달과 아동을 지도하는 부모를 위한 **함의**(이와 함께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이 커가는 것을 존중하는 것)라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매우 어려운 도전! 가족 안에서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고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격려해야하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

[테마 III: 대화]

아동권리협약에는 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루길 원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개념이다. 대화는 두 화자가 특정한 주제로 토론할

때 둘 사이의 지위의 평등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대화”라는 단어는 한 단계 전진한다. 더군다나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화의 두 구성요소에서 양자가 효과적인 참여자인 것이다. 1989년에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지협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인 수준에서 협약 제12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정책, 실천의 발전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슈는 이러한 권리를 정부, 지역조직, NGO, 성인, 부모, 아동 사이에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대화로 실행시킬 방법과 일회성 이벤트나 상징적인 몸짓뿐만 아니라 지역과 가족 수준의 관련결정과 일상에서 아동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한 단계 진전된다면, 우리는 CRC의 의사소통 절차를 제공하는 선택의정서의 발안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개념을 강화하고 아동이 그들의 권리 존중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주제 1: 새로운 민주적인 역동: 공공영역에서의 아동참여

공공영역에서 아동을 주인공으로 포함시키려면 위원회는 당사국에 명목주의(tokenism)에서부터 아동과 함께하는 상담으로의 변화와, 정책결정에서 체계적인 포함을 강요해야한다. 개혁입법, 정책결정, 계획, 자료수집, 자원배분을 포함하는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아동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가? 국가적, 지역적, 지방자치단체적 수준에서 아동과 의사결정자들을 공식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위원회는 아동국회, 청소년포럼, 회의를 만들도록 아동집단, NGO, 정부를 자주 격려한다. 이러한 조직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들은 단지 구실인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효과적인가? 아동이 의미 있는 참여와 표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들만의 조직형태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한다. 아동이 이끄는 조직을 경청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

소주제 2: 가족 안에서 아동의 목소리: 저항극복

아동이 부모를 제압하게 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가족 내에는 아동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인식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아동의 첫 참여경험을 위한 이상적인 구조가 가족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우리가 정부, 정책결정자, 입법기관, 학교교장에게 아동을 경청하라고 요청한다면 아동이 집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여기서 질문은 우리는 가족교육 내에서 이러한 접근을 격려하는 것이 개인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아동의 사회화를 지원하고 가정 내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과 소외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가? 이다.

[테마 1 : 존엄성]

워킹그룹 1(테마 1) : 아동: 권리자 vs 상품

1. 개요: 성적 착취와 학대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1989년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은 아동을 인식하는 새롭고 급진적인 방법을 선도했다. 아동은 개별적인 권리자이며, 단지부모나 보호자의 자선이 필요한 소유물이 아님, 그들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책임을 수반함, 협약은 정부가 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고려하고 대처하는 방식의 성격을 극적이고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협약의 의해 탄생된 새로운 아동의 지위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성적 착취와 학대를 포함하는 아동착취에 의해 도전받는다.

협약의 채택과 아동의 상업적인 성적 착취에 대한 두 번의 세계회의(스톡홀름, 1996, 요코하마, 2001)가 열린 이래로 국제사회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가속화되며, 세계화되는 아동의 성적 착취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일련의 국제조약들이 선포되어 왔으며, 팔레모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세계노동기구 협약 182호(ILO Convention No.182);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럽평의회 그리고 성적착취와 성적학대로부터 아동보호에 대한 새로운 유럽평의회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는 단지 첫 번째 조치일 뿐이다.

아동의 성적 착취의 과도한 유행을 조명하면서, 이번 워크숍은 2008년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착취에 대한 세 번째 세계회의에서 취한 권고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착취를 예방하고 중지하기 위한 리오 데 자네이로 선언과 조치요청의 목표와 타깃의 이행을 추구한다.

2. 예방: 권리에 근거한 틀

취해야 할 포괄적인 조치의 윤곽을 그리는 것 외에도, 리오선언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방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폭력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온 시각이다.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SGSVAC)는 모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효과적인 예방과 보호를 위한 “무조건적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보다 더 강조하였다.

실제로 예방은 모든 공적영역 및 민간영역의 활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온 단어이다. 그러나 국가는 아동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명확한 의무가 있는가? 그렇다면,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 협약은 성적학대(19조), 성매매, 음란물 및 그 외 형태의 착취(36조), 아동에 대한 학대나 착취, 아동 유괴 및 매매(35조), 불

법 이송 및 미귀환(11조),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자세히 설명된 권리들을 포함하는 아동학대와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의 의무를 명백하게 열거하였다.

3. 예방: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협약에 따르면 예방은 명백히 정부의 손에 달렸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정의를 넘어서 실제로 무엇이 예방을 성립시키는가? 위원회는 당사국에 의해 취해진 대부분의 조치들이 반작용을 일으키고, 예방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 예방적인 조치가 거의 이행되지 않아 왔다고 본다.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는 권리침해의 예방에 해를 주며, 아동폭력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원 활용은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반작용적인 위치에서 순향적인 위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부가 예방에 투자해야하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빈곤, 영양실조, 질병, 무력 분쟁, 아동노동 및 기타 권리침해, 불법과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들이 성적착취와 다른 형태의 착취에 대해 훨씬 큰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한다. 협약은 결과적으로 당사국에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다양한 근본적 원인과 징후를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이고 협조적인 도전을 해왔다. 리오선언은 특히 아동의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종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이것은 밀레니엄 발전목표 중에서도 극도의 빈곤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폭넓은 정책 구조 안에서의 주류화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환경을 경험하는 아동은 범죄활동에 연루될 위험이 커지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위원회는 리야드 가이드라인을 전적으로 지원해왔으며, 특별히 취약한 가족의 지원, 기본적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의 개입 그리고 위기청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모든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예방정책이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에 동의했다.

국제적으로 인지된 지표의 사용과 신뢰할만한 영역별자료의 수집은 정부의 표적 입법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활동 프로그램과 계획과 같은 다각적인 예방조치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가 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렇게 하면 당사국들이 이러한 아동에 의해 직면한 취약성과 위험요인의 강화된 수준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행동계획(이나 현존하는 발전계획에 그들의 통합이 존재함)과 이행 및 발전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리오선언은 모든 정부와 지원 파트너에게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틀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했다.

더욱이 이러한 노력들은 모든 아동을 위한 즉시 출생신고, 모든 형태의 아동 성착취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공유, 교내 인식고양 캠페인 개시와 같은 추가

적인 활동들에 의해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들 사이에서 지원되어야만 한다. 그들의 권리와 그들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는 요인들을 인지함으로써 아동은 성적착취를 종결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어른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에 의하면 인권침해 예방 외에도 이러한 광범위한 개입전략이 아동과 청소년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4. 핵심행위자(key actor)

명확하게 정부는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주요책임을 진다. 그에 더하여 아동의 성적착취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서 다른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예방 전략의 이행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유엔과 국제사회, 시민사회, 기관, 매개물, 공동체의 리더, 교육자 그리고 아동자신과 부모 혹은 이들의 대리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든 활동가의 충분한 참여를 요구한다. 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아동의 목소리가 예방과 모니터링 그리고 대응활동에서 강력한 힘이 되며, 그들은 의회(Congress)에서 채택한 성적 착취 종결을 위한 청소년선언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계속해서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리오선언 또한 민간영역, 고용자 및 노동자 조직, 특히 관광과 정보기술분야 그리고 법집행의 모든 수준에서 아동의 성적착취 퇴치를 가져오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위한 순향적인 관계와 협조를 맺도록 격려한다.

5. 결론

이제 우리가 직면한 핵심질문은 당사국이 채택, 이행 및 권장하는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모두는 충분한 정치적 의지와 적절한 자원배분이 요구됨)을 포함하는 이러한 의무와 위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이다. 리오선언 권고사항의 이행과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문서)를 통해 아동의 성적착취와 학대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노력은 모든 관련 활동가에 의한 긴급한 주의와 조치를 요구한다.

위킹그룹 2(테마 2) : 아동에 대한 차별

1. 개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은 각 아동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권의 충분한 범위를 증진

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원칙과 권리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삶에서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장려하고 향유할 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주요 관련 질문 중 하나이다.

제2조는 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 중 하나로서 당사국이 “아동이나 그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 민족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혹은 다른 지위와 상관없이” 협약에 열거된 권리들은 존중하고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일반원칙처럼 비차별 조항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그들의 삶, 생존, 발달 그리고 충분한 참여의 권리와 함께 큰 틀의 한 부분이며 협약의 모든 다른 권리의 해석과 이행에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아동은 종종 그들이 권리의 주체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차별을 경험한다. 이러한 차별은 대개 장애아동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복합되어 존재하며, 그러한 아동이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 소수자, 거리의 아이들, 법적 분쟁에 있거나 소외되거나 추방된 집단의 구성원인 경우 그들은 공통적으로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확산되고 있는 문제인 장애아동이 직면한 광범위한 차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실상 그리고 종종 합법적인 차별 형태에 태클을 가할 것이다.

2. 장애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틀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는 아동차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왔으며, 아동에 관한 특별총회의결과보고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포함한 차별의 제거를 위한 위임을 재확인 해왔다. 주로 NGO, 아동권리옹호와 위원회의 작업에 대한 노력으로 장애아동이 자주 경험하는 차별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장애이슈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인권조약이며, 차별의 금지영역 중 하나인 제2조와 모든 장애아동이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기의존을 증진하고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에서 충분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향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공하는 23조의 핵심으로서, 의원회가 제안한 조항은 장애아동의 존중과 함께 아동권리협약을 이끄는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0년 전에 협약이 채택된 이래 많은 정보가 이러한 이슈를 조명해왔으며, 위원회는 모니터링활동 안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9번(2006)을 이슈화함으로써 그들의 권리증진과 보호에 관한 지식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부연해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중요한 진전 조치는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채택과 함께 취해졌으며, 장애인의 개념을 자선, 의료적 처치 및 사회적 보호가 필요

한 “대상”에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에 대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권리의 “주체자”로 그들의 삶에 대한 자유롭고 정보가 제공된 결정과 활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현저한 변화의 신호가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7조를 포함한 많은 조항들이 장애아동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 집중한다. 함께 채택된 이 두 가지 인권문서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교화를 위한 으뜸가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현실

이러한 문서들과 아동권리협약 위원회의 해석안내서는 권리에 근거한 틀과 당사국이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어야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결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아동의 현실은 극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세계에 약 1억5천만 명의 장애아동 중 80%가 서비스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문맹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장애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장벽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장벽들은 사회적, 문화적, 태도적, 물리적 장애물로서 빈곤, 고립,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에서부터 심각한 차별과 죽음까지도 포함된다.

실제로 장애아동, 특히 소녀들은 그들의 집과 학교, 작업환경, 민간 및 공공 기관 그리고 공동체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해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되고 아동 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SGSVAC)의 의해 승인된 사실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세계적으로 최고 8백만 명의 아동이 거주시설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장애인이며,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지하고 일관된 관심을 갖는 이슈라고 하였다. 이러한 아동은 전기충격치료, 약물치료, 전기충격을 포함한 행동수정치료를 가당한 관리된 폭력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주 방치, 유기 그리고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의 위험에 빠지는 피해자가 된다.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는 또한 장애아동시설들이 자주 교육, 레크리에이션, 재활 및 기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사항은 장애아동이 겪는 차별의 몇 가지 예일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부에게 부여된 국제적인 위임과 의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지나서 몇 백만 명의 장애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고 대응을 추구 할 수 있는가?

4. 도전 직면

질병, 빈곤 및 전쟁과 같은 장애의 원인 대부분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상기시켜왔다. 세 부적인 조치는 명백한 법 규정 및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하는 것과 관련

된 종합적인 정책과 조치의 채택과 이행, 특히 장벽 없는 포괄적인 교육, 의료보호와 대안적인 돌봄 형태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 당사국은 또한 장애아동의 취약성을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로 악화시키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에 대응해야만 한다. 이것은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적인 원조가 포함되며, 개발도상국가의 욕구를 특별히 고려한다.

이러한 노력은 널리 퍼진 인식고양캠페인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며 이 캠페인은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이용가능하다. 적절한 훈련제공과 가족에 대한 보조 및 지원, 표준화되고 영역별로 분리된 통계,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함께 지원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능 및 관련서비스의 전달상의 분열과 중복을 줄이기 위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아동에게 독점적으로 맞춰진 다면적인 코디네이션조직의 설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이슈들이 있는가? 아동이 차별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외에 아동권리협약 제3조와 제7조 및 장애인권리협약 23조는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주요한 고려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당사국이 이러한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아동에 대한 관심 및 아동의 발전능력에 맞춘 타깃전략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명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당사국이 아동이 자신사국이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무로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7조 3항의 추가 사항이 보조와 장비를 통해 장애아동을 위하여 촉진되어야만 한다.

5. 결론

아동권리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필수적인 정치적 의지를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레벨에서 지원과 참여와 함께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차별의 형태를 제거하고자하는 실제 위임을 설명하기 위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실행되어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테마 2 : 발달]

워킹그룹 3(테마 1) : 당사국의 의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 경제위기동안 아동의 권리는 사치인가?

이번 워크숍은 두 개의 워크숍 중 하나로서 아동에게 발달을 위한 충분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슈를 다룬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제6조에서 아동발달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이에 대한 설명적인 일반논평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발달”이라는 용어를 아동의 상호의존적인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통합한 전인적인 개념으로 동일시해왔다. 그러므로 협약이행을 위한 조치들은 모든 아동에게 충분하고 최적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투자”가 현재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인간발달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보증으로서 널리 알려진 개념임을 인지해왔다. 그러나 어떤 당사국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가 제4조의 “점진적인 실현”의 원칙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여 그들의 의무는 덜 위급한 사항이며 경제적으로 더욱 번영된 시기까지 미룰 수 있다고 이해하여왔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세계경제위기 시기동안 특히 관련성이 있으며 혼란스러웠다. 정부들이 그들의 재정적 우선순위와 재정정책을 수정하면서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은 기본적인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더욱 사치로 보였다.

특히, 아동, 여성, 가족에게 나타난 이러한 위기의 압도적인 영향은 가장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침해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인 극도의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긴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증명해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워크숍에서 고려할 주요 질문은 당사국이 협약의 “그들의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하에서 그들의 의무이행을 위한 취해질 필요가 있는 활동과 조치를 전략적으로 확인하고 우선시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위의 질문에 더하여 이번 이슈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6개의 명확한 권고사항이 형성되길 원하며, 권고사항은 본회의 폐회에서 발표할 것이다.

1.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중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와 “점진적인 실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고려한 당사국의 의무는 무엇인가?
2. 최근의 경제위기동안 생존을 위하여 아동이 겪는 지속적이고 확대되는 도전들을 조명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략적인 확인과 우선적인 고려를 향해 다시 주의를 집중시키고, 당사국이 협약에 있는 그들의 의무를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도록 보장하는가?

3. 극도의 재정적 제한의 상황에서 국제적인 협력의 틀 안에서 보조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같은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다른 선택은 무엇인가?
4. 어떻게 하면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틀의 채택과 이행이 법적 조치, 발전계획, 국가적 활동계획, 광범위한 분야의 빈곤감소전략, MDG의 목표와 타깃 성취를 촉진할 수 있는가?
5. 이행을 달성한 사례나 관련 영역마다 확인 가능한 모범사례가 있는가?
6. 이행의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1. 개요 : “점진적인 실현”의 원칙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모든 아동이 협약에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의무에 의해 구속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특히 제4조는 협약의 원칙들과 조항들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들”을 포함하는 명백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의무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만 입안자들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같은 비용이 드는 성격의 개혁입안은 많은 당사국들에게 금지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제4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와 관련된 조치들은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조치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협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2조의 문구를 취하여 “점진적인 실현”의 개념을 도입했다.

점진적인 이행은 아동권리협약 내에 건강관리(24조)와 교육(28조)의 권리 이행을 고려한 선택으로서 명료화되었으나, 아마도 제6조에 의해 모든 아동이 태어날 권리를 타고났으며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상당히 인식한다. 말하자면, 제6조는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에 관한 제4조와 제7조와 연결되어 읽히며, 당사국에 아동이 주거, 음식, 교육, 건강,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의 가용자원을 위임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2. 신화

시민권 및 정치권과 사회권과 및 문화권 사이의 위계적 구분의 역사적 오류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어떤 국가들은 불행하게도 점진적인 실현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그들의 의무가 덜 시급한 성격을 지니며 경제적인 번영의 시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 위원회가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인간발달을 성취하기 위한 최고의 보증으로서 현재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으로 주목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은 그들의 재정적 우선순위와 재정정책을 수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을 통한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은 기본적인 우선권이라기보다는 사

치로 바라본다.

3. 현실

밀레니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2009년 진행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부터 약 5천5백만에서 9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극빈하게 살고 있다. 보고서는 그들의 대다수가 아동, 여성, 가족이라는 것에 상당한 과실을 기울이며, 특히 연구는 극도의 빈곤이 자주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이끌거나 악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아동은 그들의 자라나는 정신, 마음, 몸으로 빈곤을 경험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극도의 빈곤과 발달권을 포함한 모든 다른 권리의 실현에 빈곤이 미치는 급격한 영향에 대한 황폐화된 결과의 인식은 유엔 밀레니엄 선언과 보편적인 것의 확립을 위한 안내impetus의 핵심이나, 유연한 지표와 시간단위는 밀레니엄발전목표에 맞춘다. 유엔사무총장의 2009평가보고서는 9년 후에 아동이 자주 고난에 맞서는 지역에서 극도의 빈곤과 굶주림에 대한 투쟁의 진행은 모순되거나 꿈작 못하게 되어 버린다고 언급하였다. 더군다나 2015년 까지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9백만 명의 5세 이하 아동이 사망하였으며(2005년보다 천2백7십만 명 줄어듦),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폐렴, 설사, 말라리아, 홍역, HIV, 영양실조와 같은 예방가능하고 치료할 수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4. 권리에 기초한 틀에서 의무

최근의 경제위기동안 생존을 위하여 아동이 겪는 지속적이고 확대되는 도전들을 조명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략적인 확인과 우선적인 고려를 향해 다시 주의를 집중시키고, 당사국이 협약에 있는 그들의 의무를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도록 보장하는가? 한 가지 방법은 당사국이 협약과 다른 국제인권조약들의 원칙과 조항에 바탕을 둔 권리에 기초한 틀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이 법적 조치, 발전계획, 국가적 활동계획, 광범위한 분야의 빈곤감소전략, MDG의 목표와 타깃 성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많은 당사국들이 그들이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엔 불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항상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는 경제적 제한을 인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논평, 최종견해, “아동권리를 위한 자원-국가의 의무: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행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투자”에 대한 일반논평의 날(2007)을 통해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당사국이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것의 실패

에 대한 합법적인 정당화로서 재정적 어려움을 거절해왔다.

그 대신 우선순위의 문제로 목표 조치가 취해지고, 사람이 존엄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최소 핵심 내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개혁들이 취해지는 동안 점진적인 실현을 모든 당사국에 즉각적인 의무로 부과한다. 당사국은 “우세한 환경”하에서라도 가장 불리하고 소외된 사회 구성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이 관련 권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향유의 보장에 총력을 다 함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2009년 밀레니엄발전목표 진행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우호적이지 않은 경제적 환경은 국제사회가 “더욱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어려운 결정”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5. 해결책 찾기

경제적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위원회는 법적 의무가 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분산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서 당사국에게 국제적인 협력의 틀 내에서 도움을 구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가 개발된 나라와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공유된 책임이 되고 당사국은 언제나 필요한 경우(20/20 Initiative에 의해 보증된) 다른 국가들에게 권리에 기초한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아동에 관한 특별총회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의 결과문서에 따라 “좋은 영양과 전염병 관리를 포함한 건강한 삶 증진, 질 좋은 교육 제공, 학대, 착취, 폭력, 무력분쟁 으로부터 아동보호, HIV/AIDS 퇴치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며 국제사회에서 명확히 감당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조를 광범위하고 더욱 전인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를 제공해왔다. 예를 들면, “가용자원”의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은 화폐단위를 넘어서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자원, 기술자원, 조직자원, 자연자원 그리고 정보자원과 같은 모든 자원을 살펴봐야 하며, 이는 정기적으로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와 가족들은 그 중 가장 필수적인 가용자원으로서 지원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포괄적이고 영역별, 시간단위별 목표로 분류된 아동 특화된 지표의 개발을 통해 가용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정책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아동권리의 실현에 관한 진보와 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다.

6. 결과

이러한 이슈를 명심할 때, 우리가 이번 워크숍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은 협약의 “최대한도의 가용자원”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의해 취해져야 하는 활동과 조치를 전략적으로 확인하고 우선순위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워킹그룹4(테마 2) : 실제적으로 가능한 원칙으로서 능력발달

1. 개요 : 의무

1989년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기에 전에 아동은 물질적인 원조와 보호를 위하여 성인에게 의존하는 발달하는 존재이며,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7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종 힘없고, 소리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협약은 아동이 더 이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자격이 있는 권리의 주체자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냈다. 협약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영유아는 처음으로 같은 권리의 자격이 있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아직 아동은 경험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행사될지는 아동의 다양한 연령과 단계에 따라 해야 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협약의 몇몇 조항들은 당사국의 의해 취해지는 의무적인 조치들이 아동발달의 특정한 단계들에 따라 적용되어야만 한다. 특히 제5조는 현지관습에 의해 제공되는 부모, 법적보호자, 확대된 가족이나 공동체가 그들의 아동에게 적절한 방향과 안내를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의무는 “아동의 능력발달과 어느 정도 일치되어” 행사되어야만 한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발달 능력의 원칙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은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능력발달”을 직접 참조하여 정식으로 고려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h)는 그 이행을 안내하는 일반원칙 중 하나에 “장애아동의 능력발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범위와 도전의 윤곽설정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능력발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논평 7호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개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며, 아동의 성숙, 자율성, 자기표현을 지지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동은 그들의 권리와 어떻게 잘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지식, 능력,

이해력을 점진적으로 획득한다. 그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발달과 함께 확대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무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편적인 인권수준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해석하여 아동의 다양한 수준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 해답은 정부, 공동체(지역사회), 가족들이 뚜렷한 도전에 대응하면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도전은 각각의 아동의 관점에 무게를 두기 위하여 아동의 능력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이다. 두 번째 도전은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자라나는 능력과 동시에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평가에 내재된 어려움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왔다.

3. 도전 1 : 실제로 아동의 능력 결정하기

아동의 삶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아동의 능력을 존중하는 것을 많은 성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해왔다. 실제로, 이것은 아동이 발달이 부족하고, 이해력, 의사소통 및 알고하는 선택(informed choice)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지나치거나 거부하게 된다. 이러한 회의론은 아마도 어린 아동에게는 거의 분명할 것이다. 위원회가 일반논평 7호에서 강조한 것처럼, 어린 아동은 특별한 보호조치와 그들의 발달에 따른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권리자들이다. 위원회에서 8세 미만으로 정의한 유아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아와 어린 아동은 그들의 환경에 매우 민감하며 그들이 말이나 글을 사용할 수 있기 훨씬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각 아동의 구별되는 능력발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들의 어린시기의 삶 뿐 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서 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다.

실제로 위원회는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12호(2009)에서 연령만으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이해력의 유의성과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연관된 것은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방법(태도)에서 아동의 견해를 표현하는 능력이다. 연구에서 정보, 경험, 사회적, 문화적 기대와 지원수준이 아동의 관점을 형성하는 능력발달에 극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각각의 상황은 각각의 사례를 바탕으로(case by case) 접근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능력발달을 소녀, 어린아동, 소수민족에 속한 아동, 길거리 아동, 법적 분쟁에 있는 아동, 장애아동, HIV/AIDS에 감염되었거나 영향을 받는 아동과 및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불평등으로 인한 난민과 추방자의 아동을 포함하는 특히 취약한 아동에 관하여 다르게 인식할 것을 상기시켜왔다. 이러한 불평등은 그들의 폭력, 학대, 착취 및 차별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

시키고, 범죄활동과 관련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증가된 취약성을 명심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이 제12조와 제2조에 따라서 차별 없이 그들의 경청 받을 권리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보일 것을 주장해왔다.

4. 도전 2 : 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의 조화

제5조와 제18조에 의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지도와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부모와 다른 사람들의 책임 및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는 것과 함께, 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의 목적은 아동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것을 아동과 그들의 부모 사이의 권리에 대한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제6조와 29조에 의해 그려진 대로, 그리고 위원회에 의해 표현된 아동의 상호의존적인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로서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보장하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부모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5조에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의 흥미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아동의 능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과 지도의 수준을 조정해야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해왔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경험으로 아동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과 관련된 책임 수준이 부과되는 자격을 얻게 된다. 부모가 예시나 대화를 통해서 제공하는 초기의 지도와 안내는 조언자로 변모되어야하며, 궁극적으로 동등한 기초에 관한 변화로 발전해야한다. 이것은 부모가 상호 존중과 정보공유에 기초한 아동 양육을 위하여 아동 중심적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부모들이 아동을 충분히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능력을 지닌 독립적인 권리자로서 아동을 인식하는 반면, 부모가 아동의 이해수준과 선호하는 대화방식에 맞춰주는 인내와 창의력을 보이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동이 능력을 지닌 사람이며, 그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들만의 삶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아동의 역할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일반논평 4호의 2와 9호의 3에서 정부가 건강한 부모-자녀관계, 훈육의 건설적인 형태, 아동의 능력발달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을 증진하도록 아동발달 접근에 주제를 맞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배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5. 능력발달에 관한 인식 실천하기

일단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 왔다면, 어떤 영역이 아동의 발달능력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가? 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능력발달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들을 결

혼, 성적동의, 의학적 처치에 대한 동의를 위한 최소연령 설정,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에의 참여, 제17조, 29조, 42조에 따른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참여,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방치, 착취와 관련된 예방적이고 대응적인 조치와 프로그램의 개발, 모든 관련된 의식고양활동에의 참여를 포함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부, 공동체(지역사회), 학교, 가족은 어떻게 아동과 청소년에게 그들의 독특한 능을 고려하면서 이러저러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는가?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국부적 발안에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정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국내회의, 자문위원회, 공개토론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5조와 제12조의 실질적인 의무를 만들 것을 주장해왔다. 특히 위원회는 일반논평 12호에서 아동 참여는 제6조와 29조와 일치하는 아동의 충분한 발달과 발달능력을 자극하도록 돕는다고 언급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경청 받을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근거한 이행조치 및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관련입법, 정책, 행동계획을 통하여 상세화된 권리에 기초한 틀을 세우고 적절한 자원을 지원할 것을 격려해왔다.

6. 결론

그렇다면 우리의 주요 임무는 능력발달의 이슈에 관한 탐구를 통하여 아동의 다양한 단계와 현실을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관련 이슈는 가정과 공적인 영역 특히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곳에서의 아동의 참여를 격려하면서 아동의 능력발달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테마 3 : 대화]

워킹그룹 5(테마 1) : 새로운 민주적 역동: 공공영역에서의 아동참여?

이번 워크숍은 두 개의 워크숍 중 첫 번째 워크숍으로서 아동권리협약의 참여적 접근에 따라서 성인과 아동간 대화의 촉진에 관한 이슈를 다룬다. 제12조는 국제인권조약의 첫 번째 조항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포함한)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아동에게 그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식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경청 받을 권리를 다른 조항들을 해석하고 이행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 중 하나로서 확인해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슈는 이러한 권리를 정부, 지역조직, NGO, 성인, 부모, 아동 사이에서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대화로 실행시킬 방법과 일회성 이벤트나 상징적인 몸짓뿐만 아니라 지역과 가족 수준의 관련결정과 일상에서 아동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동과 성인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대화는 두 화자가 특정한 주제로 토론할 때 둘 사이의 지위의 평등을 내포하며, 그 대화의 두 구성요소에서 양자가 효과적인 참여자라는 것을 수반한다. 몇몇 진전은 사실상 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핵심주제로 다루는 만남, 회의, 제도적 단체에서의 대표자들로서 아동참여의 증가를 공공영역에서 달성해온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이 명목주의를 넘어서 아동과 실제로 상담하고 아동과 의사결정자와의 연계를 형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로 나아가길 강렬히 강요해왔다.

응답되길 바라는 질문에 더해서 이번 이슈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6개의 명확한 권고사항이 형성되길 원하며, 권고사항은 본회의 폐회에서 발표할 것이다.

1.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아동참여를 제도화하는 국가적 차원의 메커니즘들을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참된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가 아니면 구실일 뿐인가?
2. 위원회는 아동이 그들만의 조직을 형성할 것을 장려해왔다. 당사국은 이러한 시도를 장려하고 지원해왔는가? 그러한 곳에서는 아동이 주도하는 조직에 대해 경청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정부가 아동이 주도하는 조직과 활발한 관계를 맺도록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참여증가와 더욱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이행을 달성한 사례나 관련 영역마다 확인 가능한 모범사례가 있는가?
5. 아동권리의 완전한 구현을 억제하는 주요장애물과 도전은 무엇인가? 이 장애물들에 대응하여 무력화(해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 이 이슈를 고려할 때 선택의정서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7. 이행의 향상을 위한 권고사항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1. 개요 :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은 아동을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적절한 책임을 지는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보는 아동의 새로운 지위를 만들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작은 부분적으로 제12조에 기인하다. 2009년 아동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에서 언급하였듯이 제12조는 아동들에게 자신들의 관점을 형성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충분히 가중되어질 수 있게 하는 국제인권조약의 첫 번째 조항이다. 이러한 경청 받고 진지하게 수용받을 권리는 이 협약의 근본적인 가치를 구성하며 일반원칙의 하나로써 제2조, 3조, 6조와 함께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 더하여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다른 권리의 해석과 이행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12조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정하고 이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그리고 문화적 구조와 관습의 장기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권리자로서 아동을 인정함을 상징화 하는 것이라고 제의한다.

최근 수년간 ‘참여’라는 말은 제13조, 17조와 더불어 제12조의 개념의 동의어가 되었으며 지금은 아동의 삶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과 수단을 개발함에 있어 진행되는 성인과 아동간의 정보공유와 대화의 과정으로 설명되어지곤 한다. 12조의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며,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의 날에서 참여라는 용어는 투명하고 유익하며 자발적이고 정중하고 타당하며 아동 친화적이며, 포괄적이고 훈련에 의해 지원되며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하고 신중하며 관찰되어지고 수용 가능한 과정으로서 널리 이해됨을 권유한다.

12조는 아동의 참여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항으로 인식되며 위원회는 당사국을 아동과의 상담 안에서 계획과 개발 그리고 작업의 필요성이 협약 전반에 걸쳐서 발견됨을 상기시켜왔다.

2. 법률에서 현실까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조치

아동을 수동적인 수급자에서 능동적이고 동등한 참여자로 인식하는 변화로서 제12조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을 공공 영역에서 영속적 주체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당사국에 명목주의를 넘어서 적극적인 아동과의 대화를 촉구한다. 이는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과 계획, 지표, 아동중심적 기준의 개발 및 이행 특히 대안적인 돌봄, 건강, 교육, 노동, 지역사회 개발, 자료 수집, 자원배분,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인 전략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법적보호와 체계적인 포함을 수반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동과 정책결정자들 간의 연결을 형성하는 것임을 권고해 왔다. 특히 위원회는 아동 단체, NGO와 정부는 아동의회, 젊은 층을 위한 공개 토론장, 젊은이들의 의회와 위원회를 국가/지역/도시 단계에서 만들 것을 장려해왔다. 그러나 모든 단계에서의 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계획이나 실행된 조치가 있는가?

이행의 일반적인 조치에 관한 이노센티 연구는 많은 정부가 지방과 국가, 지역과 국제적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 의회가 많은 나라에서 만들어 졌으며 이와 동시에 아동은 국가와 지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다. 좀 더 자주 아동은 몇몇 부분에선 법적인 구조에 통합되어 특별히 만들어진 시 자문회와 지역 기구에 참여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비록 위원회가 참여하는 아동들이 제한되어있다고 언급하긴 하지만, 우선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그들의 특별한 견해와 지식과 기술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부여하는 기회를 아동들에게 제공해 왔다. 정보기술은 현존 구조에 있어 많은 아동 옴부즈맨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넷 아동 상담 시스템과 같은 참여를 위한 대안적인 채널을 개발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단지 당사국에 있어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당사국은 아동 참여와 관련된 의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혀왔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와 시행의 질과 영속화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보내왔으며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절차의 존재와 효율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과연 이러한 제도적인 수단들이 진실로 민주적 절차로 아동의 진정한 참여를 촉진하였는가, 혹은 단순히 구실일 뿐인가?

3. 행동을 취하는 아동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써 위원회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아동의 집단이 그들만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당사국은 이러한 집단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책임지며 허가를 보장할 것을 촉구 받았다. 실상 세계의 무수한 아동단체들과 네트워크들이 적극적으로 거리아동과 근로아동, 폭력과 재난 예방, 소년가장세대, 특히 HIV 와 AIDS, 그리고 아동의 정치적 참여를 포함하는 주요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적 방안을 도입하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매체와 정보기술과 함께 참여적 활동을 이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는가? 몇몇 나라에서는 아동 단체는 허가된 모임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례에서 그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활동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아동은 아동에 관한 특별총회(1900/2002년) 및 다양한 국제회의와 회

합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협약의 보고절차에서의 참여자로서 점점 활발해 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구두중재와 문서제안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에서의 아동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고 위원회의 최종관찰에 대한 국가 이행 모니터링에서 아동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른 모든 아동권리국제조약들의 비준을 촉진해왔다.

4. 도전에 대응하기

위원회는 아동 참여에 관한 긍정적인 이러저러한 예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종종 비지속적이고 임시변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해를 끼치는 전통적 관례·태도·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장벽에 의해, 특히 소녀와 소외되고 불리한 계층의 아이들이 방해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행동은 심지어 공식회의에서 아동의 실험적인 참여가 자주 적절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지던 때조차 명백했었다. 무엇보다도 위원회는 12조의 이행은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제한하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없애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의 실현을 제한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은 나이와 성숙도에 맞춰 주어진다는 회의의 조항이다. 그러나 이 영역의 모호함과 비경험이 당사국들이 행동을 취하는 것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이런 평가로 제기된 복잡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특히 아동이 그들 자신을 집합적으로 표현할 때,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아동 및 아동단체의 능력을 평가할 때 따라야할 실제 조치의 윤곽을 그려왔다. 당사국은 반드시 아동의 재능에 관한 추측을 환기하고 집합적으로 말운곽을 그의 관점을 경청하며 개별사례에 기초한 접근에(case by case basis)에 훈련된 전문가와 협조하여 평가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활동은 아동을 존중하는 문화와 그들의 시각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촉진하는 권리에 기반을 둔 틀에 근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협약에 의한 의사소통절차를 제공하는 선택의정서를 상세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근의 발안을 언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절차는 국내 체계가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패했을 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국제적 차원에서 그들의 권리 존중을 옹호하도록 할 수 있다.

5. 결론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는 당사국은 틀림없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당면한 이슈는 정부, 시민 사회와 아동 사이에서 경청 받을 권리를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대화로 바꾸는 방법과 아동의 참여

를 격려하기 위하여 단지 하나의 이벤트 및 상징적인 제스처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취하는 모든 결정에 아동의 참여를 격려하는 방법이다.

워킹그룹 6(테마 2) : 가정 내에서의 아동의 목소리: 저항의 극복

1. 개관 : 대화와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

1989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과 함께 독립적인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새롭고 급진적인 지위가 도입되었다. 선의와 자선적인 행동의 수혜자로서의 아동의 전통개념에 도전하기 위하여 12조는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우리는 참여에 관한 것을 포함한 권리주체로서 아동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다루는데 있어 공적과 사적 영역에서 아동과 어른사이의 대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한다. 대화는 우리가 구체적인 주제를 의논할 때 두 화자 사이의 지위의 평등을 암시하며 대화의 두 요소에서 양자는 효과적인 참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의 몇몇 분야에서는 아동 참여의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가정 내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권리에 대한 강한 저항이 빈번히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동등함이란 개념이 가족 내에서 아동의 전통적인 개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동기관은 아동은 미성숙하고 이해, 의사소통과 결정과 같은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자주 이를 간과하거나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다.

가정환경(양육의 다른 형태를 포함하여)은 아동이 그들의 형성기를 보내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 넓게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아동의 첫 번째 참여라는 경험은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위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우리가 아동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정부와 정책결정자들, 입법부와 학교 관리자에 문의한다면 가정 내에서의 관점이 무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는 가정 내 교육에서의 이러한 접근을 장려하는 것이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사회화를 지원하고 집과 가정 내에서 폭력과 소외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효과적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과 그들의 부모 혹은 양육자 사이의 참여적인 대화를 만들 수 있을까?

2. 가정에서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 모델링

만약 우리가 아동이 경청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가족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면, 그 모델은 어떨까? 일반논평 12호(2009)에 의하면, 아동이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

여지는 가족은 일상의 문제와 중요한 결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모델을 제공한다. 실제로 부모는 아동이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러한 관점을 정식으로 고려하며, 공공영역에서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을 위한 인권교육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가정환경 안에서 아동이 그들의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인식하게 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안하였듯이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아동,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민주주의에 유익하다.

협약에서 제5조는 지역적 관습에 의해 제공될 때 부모, 보호자, 확대가족과 공동체가 아동의 발달능력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도록 아동에게 필수적이고 적절한 방향과 안내를 제공해야하는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부모와 아동 간 이익의 상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12호에서 부모는 특히 제3조, 18조, 25조와 27(3)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있어서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당사국은 부모, 보호자 및 아동보호자가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들의 의견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입법과 정책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별, 진시켜야 하며, 특히 협약이 간직한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목소리쫄보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 존중 관계형성, 각 가족구성원의 관점의 공정한 무게를 두는 이행과 약이결정에서 아동참여, 아동의 능력발달을 특히 힘 진들의 존중하는 것, 가족 내 불화를 다룰 수 있는 방법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 소녀는 그들의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견에 한 권리를 지닌 확산것을 것으로확산것 취약 개발하는 것대안적인 보호를 반확산아동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된 기회를 동등하게 가져야 하며, 그들의 의견은 그들의 위치, 양육과 일상과 관련된 규율과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개발 및 적용에 정식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 침해 발생에서 교정적인 도움을 추구해야한다.

아동의 권리침해에 관한 사무총장 진행보고서에서는 양육에 있어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아동의 사회화를 돕고 동시에 차별을 타파하고 집과 학교, 공동체에서 체벌과 같은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는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가 기록한대로 성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 폭력을 타파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가정은 외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 사적 영역이라는 모호하나 깊숙이 박혀있는 믿음에 기인한 가정환경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아동의 삶, 생존, 발달, 존엄성, 육체적 고결성은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가정의 문 앞에서 멈추지 말고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아동은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인식해야하고 여성 할레, 구속(속박), 상처, 화상, 낙인, 폭력적인 신고식, 살찌우기, 조혼과 강혼, “명예”범죄, 지참금 관련 폭력, 퇴마나 마법 같은 해로운 전통적 인습을 포함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어떤, 그리고 모든 폭력에 대한 비난의 두

려움 없이 발언할 기회를 가진다.

3. 책임의 공유

아동에 관한 특별총회의 결과문서(outcome document)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록 부모, 가정, 법적 가이드라인과 다른 양육제공자들이 아동의 복지와 양육에 있어 주된 책임을 지긴 하지만 이는 정부와 당국,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이들의 대리자, 의원과 의회, NGO와 시민사회, 독립된 국가인권기구, 사적 부문과 협의체, 종교·정신적·문화적·토착 지도자들, 그리고 지역·국제기구와 다자기구를 포함하는 전체 사회에 의해서 지지되어야만 한다. 대중매체 또한 아동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 모든 다른 인식증진 활동을 위한 아동의 참여의 가치를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4. 사법적·행정적 개입

가족문제가 법원, 행정기구나 중재자의 개입을 필요로 할 때, 제12조(2)는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송은 접근가능하고 아동에게 적합하며 공정한 절차라는 기본적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위원회는 이 조항은 별거, 이혼, 부모나 대리양육기관과 분리, 다른 형태의 입양, 물리적·정신적 폭력의 희생, 성적 학대, 무력분쟁과 비상사, 피난, 망명시도, 미동행 아동(unaccompanied children), 법적 분쟁을 겪게 되는 아동을 다루는 사법적·행정적 시안에 적용된다고 언급해 왔다. 행정소송 또한 아동의 교육, 건강, 환경, 생활수준, 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 모든 경우에 아동에 의해 표현된 의견에 무게를 둘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주요 고려사항이며 그들의 경청 받을 권리와 그들의 의견이 정식으로 고려되는 것이 거부되거나 침해당했을 때 신뢰할 만한 불평 절차에 접근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왔다. 또한 자주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초래되는 취약성의 높은 위험에 대응하는 특별한 보호가 취해져야만 한다.

5. 결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다음 단계는 가정과 사적 영역 내에서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를 상세화하는 것에서부터 아동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격려하여 이러한 권리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다.